

● 제284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1. 2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오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41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외 20명)
- 나. 제출일자 : 2018년 10월 31일
- 다. 회부일자 : 2018년 10월 31일

2. 제안이유

- 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들의 입원치료에 대한 일실손해액 보장을 통해 입원치료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유급병가” 급여를 제공하고자 함.
- 나.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는 정규직 및 상용직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이 높고 질병으로 인한 실업 등 소득상실로 이어지는 상황으로(정규직에 비해 영세자영업자는 2배, 일용직은 1.7배의 의료비 지출)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 다. 이에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도입을 통해 질병치료 등으로 소득상실이 발생하나 지원책이 없는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2조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서울형 유급병가의 금전적 지원근거를 마련함.
- 나. 제3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시책수립, 중앙정부제도와의 연계)
- 다. 제4조 지원대상자를 정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구체적인 제도의 안을 규칙에 위임함.
- 라. 제5조 매년 동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함.
- 마. 제6조 서울형 유급병가의 전달체계 및 신청주의 명시함.
- 바. 제7조~제12조 유급병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하여 설명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의료법」, 「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제정안의 취지

- 동 조례 제정안은 “서울형 유급병가”의 운영과 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질병치료 등으로 소득상실이 발생하나 지원책이 없는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안된 안임.

2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관련

- 동 조례 제정안은 “서울형 유급병가”의 운영과 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동 조례가 제정되게 된다면 서울형 유급병가의 사업이 실현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동 조례 제정안의 주요한 필요이유 중 하나는 「지방재정법」 제 17조제1항에 따라¹⁾ 조례나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

1)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금전적인 지원에의 근거가 명확해야 함. 따라서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을 위하여서는 동 조례 제정안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임.

나. 구체적인 수행방향과 관련

- 동 조례 제정안은 제3조제1항에서 시장의 책무를 통해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 시장은 “서울형 유급병가”를 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각 호에서 제시된 제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유사 제도에의 중복수급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주요한 규정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동 조례 제정안은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위임하였음. 이는 사회보장성 급여로서 서울형 유급병가가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소득기준의 설정, 재원의 안정적인 마련 등을 위해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는 안으로 평가됨.
- 동 조례 제정안 제5조는 유급병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동 조례 제정안 제4조와 함께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로 작동하며 동 조례 제정안 제7조에서 제시하는 유급병가 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심의받도록 되어 있어 시의 자의적인 집행이나 선심성의 집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외부 환경에 대한 의견

- 동 조례 제정안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사업의 실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예산안 제출 시기를 고려해 볼 때 사회보장위원회 심의가 종료되지 않은 점 등은 동 조례 제정안의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제시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지나친 정도의 중앙집권적 통제를 통해 지방자치에 단체가 자율적으로 복지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할 수 없게 만들어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는 상황임.
- 동 조례 제정안을 통해 수행될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은 상병수당과 아주 유사한 제도인 바, 동 조례 제정안을 통해 하고자 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실험적인 제도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동 조례 제정안의 심의에 있어 사회적인 파급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존재함.

4 종합의견

- 동 조례 제정안은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안의 발의와 관련한 부분에 한정할 때)법률적인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으며, 상위법이 될 수 있는 「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그러나 동 조례 제정안의 심의에 있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동 조례 제정안을 통해하고자 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바, 이러한 외부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집행의지가 중요하다고 사료됨.